

제292회 임시회  
2010. 7. 23.(금)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교육위원회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0. 7.23.(금)  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0년 7월 2일

○ 회부일자 : 2010년 7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2010. 7. 21,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 
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기획관리국장 연희지)

가. 제안이유

교육청 또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발급 가능한 교육관련 민원서류에 대하여 온라인민원 이용 활성화와 대국민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수수료 무료화를 추진하는 한편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1)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함(안 제5조제5항 신설)
- 2)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의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
  - 가) 띄어쓰기
    - 항 번호(①, ②) 다음에는 한 칸 띄고 본문을 씀
    - 각조, 각항, 각호, 각목 → 각V조, 각V항, 각V호, 각V목
  - 나) 용어정비 등
    - 의한, 의하여, 의한다 → 따른, 따라, 따른다
    -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→ 제○조에 따라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전문위원 구명회)

###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

- 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,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법률 용어 등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따라서, 본 개정조례안은

- 온라인 민원 이용 활성화와 대국민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,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도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

- 제증명 수수료 감면에 따른 세입재원의 손실액은 연간 어느 정도인지?
- 도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어떤 종류가 있는 지?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) ①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배정수수료
2. 시험수수료
3. 검정고시수수료
4. 제증명수수료
5. 정보공개수수료

② 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 1, 별표 2와 같다. 다만,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.

제3조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수수료 징수 방법) ① 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, 시험·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

그 지원자로부터 별표 1, 별표 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따라 징수한다.

② 별표 1의 증명사항으로 여러 건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1건으로 하며,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 통마다 1건으로 하고, 여러 명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매 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.

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수수료 징수 면제) 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·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② 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, 「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9항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,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, 「아동복지법」 제2조,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자

③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

④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

⑤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

⑥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
<p>제2조(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) ① 수수료라 함은 배정수수료, 시험수수료, 검정고시수수료,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.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② 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1, 별표2와 같다. 다만,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.</p>	<p>제2조(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) ①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배정수수료</li> <li>2. 시험수수료</li> <li>3. 검정고시수수료</li> <li>4. 제증명수수료</li> <li>5. 정보공개수수료</li> </ol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② 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 1, 별표 2와 같다. 다만,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.</p>
<p>제3조(적용범위)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

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.

제4조(수수료 징수 방법) ①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, 시험·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 1, 별표 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한다.

②[별표1]의 증명사항으로 여러건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1건으로 하며,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 통마다 1건으로 하고, 여러명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매 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.

③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수수료 징수 면제) ①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·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②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 받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

----- 따른다.

제4조(수수료 징수 방법) ① 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, 시험·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 1, 별표 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따라 징수한다.

② 별표 1의 증명사항으로 여러건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1건으로 하며,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 통마다 1건으로 하고, 여러 명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매 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.

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수수료 징수 면제) 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·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② 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제1항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, 「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9항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,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, 「아동복지법」 제2조,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자
- ③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
- ④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
- <신 설>
- 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, 「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9항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,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, 「아동복지법」 제2조,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자
- ③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
- ④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
- ⑤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
- ⑥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

관계법령 발취

[지방자치법]

- 제137조 (수수료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 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제139조 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**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-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